

2023. 7. 24.(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2133-7310
		복지정책팀장	박진용	2133-731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6353-0480
		청년지원팀장	김영수	6353-9101
		담당자	한송희	6353-9103
서울희생법원	공보관	우상범	02-530-1605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쪽

서울시-서울희생법원-서울시복지재단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에 맞손 잡다.

- 7.21.(금) 15:00, 서울희생법원에서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개인희생 변제완료 예정 및 면책완료 청년 대상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추진 협력
- 전국 최초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서울시·법원·복지재단 간의 우호적 협력 모델 구축
- 재기 노력 청년의 재도산 예방 및 성공적 도약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기대

- 서울시는 서울희생법원,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은 7월 21일(금) 오후 3시,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 안병욱 서울희생법원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희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이번 협약은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의 실질적인 재기 및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서울시와 서울희생법원, 서울시복지재단은 오는

8월부터 개인회생 청년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금융취약 청년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을 지칭한다.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절차의 부채변제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청년의 재무역량을 강화해 재도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내용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50만원 ×2회)

○ 모집시기 : 2023년 8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절차



-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운영을 총괄·기획·조정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사업 참가자 선발(신청자 조회)과 홍보를 지원하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 참가자의 선발 지원과 교육 및 상담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변제 과정을 마친 재기 노력 청년의 재도산 예방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힘을 합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2013년부터 빛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엔 청년동행센터를 개소해 청년 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청년재기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청년 자립 토대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의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협력사업 모델이 될 것이다”며, “빛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정책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붙임 1. 업무 협약식 개요 및 사진
 2. 업무협약서(안)
 3.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관련 Q&A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23. 7. 21.(금), 15:00
- 장 소 :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 협약명칭 :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 체결기관 : 서울시특별시, 서울회생법원, 서울시복지재단
 - ※ 참석자 : 서울회생법원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울시 복지기획관
- 진행내용 : 협약내용 소개, 인사말씀, 협약서 날인 및 교환, 기념촬영 등
- 협약내용(기관별 역할)
 - 서울시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운영 총괄·기획·조정
 - 서울회생법원 : 참가자 선발(신청자 조회) 및 홍보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 참가자 선발 지원, 교육·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와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이라 함) 및 서울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함)은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의 금융복지 향상과 재기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법원, 재단이 상호협력하여 금융취약 청년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 및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서울시와 법원, 재단은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제 규정 및 관계 법령 내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한다.

제3조(상호협력) 서울시와 법원,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 ① 서울시는 금융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운영을 총괄·기획·조정한다.
- ② 법원은 금융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참가자 선발(신청자 조회) 및 홍보를 지원한다.
- ③ 재단은 사업 참가자의 선발을 지원하고, 교육 및 상담 등 금융취약 청년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④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 ⑤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정보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 서울시와 법원, 재단은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획득·공유된 정보 또는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및 해지) 본 협약은 각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유효하다.

2023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장

안 병 욱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 상 철

1.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및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및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하여 금융취약 청년의 재무역량 강화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금융교육 2회, 맞춤형 상담 3회)

- 금융교육 :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 1:1 맞춤형 재무상담 : 재무상태 파악, 재무진단 및 대안마련, 대안실행 및 점검 등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및 안내

2.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참가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사업 공고 당해 연도에 만 19 ~ 39세¹⁾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 ③ 신청일 기준 취업자²⁾ ④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³⁾ ⑤ 신청일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3개월) 및 완료자(6개월 이내)⁴⁾인 경우에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1) '23년 기준 1983. 1. 1.부터 2004. 12. 31. 이전 출생자

2)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3)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910,000	103,263	39,753
2인	4,839,000	173,332	128,505
3인	6,209,000	222,624	187,378
4인	7,562,000	272,226	249,281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4) 신청일 기준 변제완료 6개월 이내인 자(면책 신청자 등) 포함

※ 신청일 기준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되며, 자격요건에 대한 최종확인인 행정 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3.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자격요건 중 신청월 기준 변제완료 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변제완료 예정 및 면책결정에 대한 구분과 해당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최종 변제기일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된 변제 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합니다.

구 분	해당 기간	설 명	비 고
면책결정 받은자	2023.2.1.~8.31.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변제 완료자	2023.2.1.~8.31.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변제는 완료하였으나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자
변제완료 예정자	2023.8.1.~11.30.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 하는 자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
	2023.5.1.~8.31.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지 3개월 이내인 자	

- 변제완료 예정 및 면책결정 등에 대한 신청자격 여부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8월10일 공고기준(예시)

- ① 23년 2월 2일 면책결정자 → 신청가능
- ② 23년 2월 10일 변제완료자(최종 변제기일내 변제완료) → 신청가능
- ③ 23년 1월 31일 면책결정자 → 신청불가
- ④ 23년 11월 변제완료 예정자(미납없음) → 신청가능
- ⑤ 23년 12월 변제완료 예정자(미납없음) → 신청불가
- ⑥ 23년 7월 25일 최종 변제기일 경과(미납 1회) → 신청가능